

충청북도 119수상구조대 설치·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6. 10. 25.

제안자 : 김인수 의원외

수정 이유

- 조문 이해의 용이성, 명확성을 기함은 물론, 현실 운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

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7조(복제)제2항중 “복제의 종류와 내용은”을 “복제의 종류와 표식은”으로 함
- 안 제11조(교육훈련)중 “모집·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”를 “모집·선발한 수상구조대원”으로 함

충청북도 119수상구조대 설치·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·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(복제)제2항중“복제의 종류와 내용은”을 “복제의 종류와 표식은”으로 하고

안 제11조(교육훈련)중“모집·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”를 “모집·선발한 수상구조대원”으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·운영 조례안</p> <p>제7조(복제) ① 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서장이 정한다.</p> <p>제11조(교육훈련) ①소방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·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임무에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	<p>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·운영 조례안</p> <p>제7조(복제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.....복제의 종류와 표식은.....</p> <p>제11조(교육훈련) ①..... 모집·선발한 수상구조대원.....</p>